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행정지시: No.2020-29

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따른 재택 명령 (업데이트)

- 2020년 3월 14일부터 괘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팬데믹 비상사태를 선포함.
- 제10조 19항 19405목에 의거하여 괘 주지사가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30일 동안 유효함.
- 행정지시 No. 2020-03를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세가 증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6차례 연장함.
- 괘은 비상사태에 대한 제한 및 규제 시행을 결정하기 위해 팬데믹 준비 대응 상태 (이하 PCOR) 시스템을 도입함.
- 2020년 4월 30일, 괘 정부는 괘을 PCOR1 상태로 선언함. 이에 따라 사회적 모임 및 비필수적 활동 금지, 주요 기관 운영 조건, 시설 휴업 및 학교 휴교 등을 엄중히 제한함.
- 2020년 5월 8일, 괘은 행정지시 No. 2020-14를 통해 괘을 PCOR2 상태로 전환하며, 괘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 (이하 DPHSS) 지침에 준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운영을 수용 제한 인원에 따라 허용함.
- 2020년 7월 19일, 괘은 행정지시 No. 2020-24를 통해 괘을 PCOR3 상태로 전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용 제한 인원에 따라 사업장 운영 및 모임을 허용함
-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괘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 이에 따라 2020년 8월 16일, 괘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다시 PCOR1 상태로 전환함.
- 2020년 8월 21일, 괘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하여 일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6번째 사망자가 발생함. 이에 따라 괘 정부는 괘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일시적으로 재택 명령을 내림.
- 재택 명령 실행은 모든 사업 운영을 금지하고 중대한 사항을 제외한 관공서 출입 제한, 공원 및 해변 이용 금지를 포함함.
- 재택 명령을 실시한 지 6일이 경과되는 기간 내 괘 코로나19 확진자가 343명 발생하였으며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팬데믹 기간 동안 총 1,000명 이상의 확진자 수를 기록함.

- 현재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괌 메모리얼 병원에서 치료중임. 괌 메모리얼 병원은 확진자 수용에 있어 한계에 넘어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높은 확진율은 위기 관리 기준 선별 없이 모든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 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침.
- DPHSS 지침에 따라 식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치는 82명임.
- 공중보건 및 안전을 위해 재택 명령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일시적인 괌 입국 제한이 필요함.
- 지속적인 재택 명령 아래 거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및 활동 허용 범위 조정이 필요함.
- 이에,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공표함.

1.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

2020년 8월 30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행정지시 No. 2020-03에 의해 처음 공표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 (행정지시 No. 2020-03을 통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처음 공표 후 행정지시 No. 2020-09, No. 2020-11, No. 2020-16, No. 2020-22, No. 2020-24를 통해 연장하여 8월 29일까지 유효하였으나 본 행정지시 공표를 통해 30일 추가 연장)

2. PCOR1

괌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엄중한 제한 조건 아래 PCOR1 상태를 유지함.

3. 재택 명령

행정지시 No. 2020-28에서 공표한 재택명령은 2020년 9월 4일 오후 12시까지 연장됨. 괌의 모든 사람은 식품 및 생활 필수품 구매, DPHSS가 지정한 중요 사업체의 출퇴근, 의료 서비스 이용, 피 부양자 또는 애완동물 돌봄, 또는 타 지역에 있는 건강에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 외에는 재택 해야함.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ÁTÑA, GUAM 96932
U.S.A.

a. 관 정부 운영

관 정부는 계속 운영되지만 대중이 방문할 수 없음. 모든 관 정부 기관은 DPHSS가 지정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고객 서비스를 중지함. 이용 가능한 정부 서비스에는 재무, 수집 및 출납 서비스, 그리고 중요 사업을 지원하는 특정 서비스가 있음. 관 정부 고용인은 소속기관에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재택근무를 해야함.

b. 모임 금지 및 사회적 거리 의무화

제10조 3항 3호 3317목에 의거하여 하기에 허용된 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 및 집회가 금지됨.

i. 종교 모임과 집회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종교 예배와 의식은 주차장에서 행해질 수 있음. 그러나 DPHSS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활동 시, 신도들은 차량 내부에 머물러야 하며, 타인과 대면하는 일을 피해야 함. 종교 단체와 신도들은 해당 지침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추가로 준수해야 함.

c. 시설 및 자재에 관한 긴급 조치

모든 사업장 또는 공공 숙박 시설은 폐쇄되어야 하며, 현장 운영을 금지함.

운영 금지조치는 2020년 8월 29일 오후 12시부터 DPHSS 지침에 따라 다음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가정보건 종사자를 포함한 의료 분야; 대중 교통수단과 공익 사업의 운영; 식료품 가게, 농산물 직매장,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및 테이크아웃 음식 판매 식당, 은행 및 신용조합, 보험회사, 건설 회사, 자동차 수리 및 부품 판매, 음식 배달 업체, 푸드뱅크, 편의점; 경제적 복지가 필요한 개인에게 쉼터를 지원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 약국, 의료기 상점, 의료 시설; 주유소 및 자동차 정비소; 쓰레기 수거; 안전, 위생 및 기타 필수 업무 운영 유지에 필요한 철물점, 배관공, 전기기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등. 차량 판매 및 부동산 운영은 지명된 곳에서만 허용됨.

d. 강제 완화 조치

본 행정지시 및 DPHSS에 공표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거주자는 중요한 활동이 아닐 시 자택에서 엄격히 격리 조치를 취해야함. 본 행정지시는 DPHSS 지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침에 따라 영업이 허용된 모든 사업과 활동은 최소한 2미터(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위생 안내 게시물 부착, 물건 자주 닦기 및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재택근무를 장려함. 본 행정지시에 따라 허가 받은 기업을 후원하거나 허용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DPHSS 지침을 준수하여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모든 조치를 따라야 함.

e. 원격 수업

제10조 3항 3호 3317목에 의거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 가족, 교직원 및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괌 교육부에서 대면 수업이 중요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모든 공립학교의 건물 및 시설은 운영을 멈추고, 휴교함. 강사는 원격 수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사립학교는 전 직원이 휴직하되, 강사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음.

f. 공공 공원 및 해변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괌 내 모든 공공 공원 및 해변은 사회적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개인의 운동을 목적으로 개방됨. 어떤 경우에도 공공 공원과 해변을 집회나 사고 모임에 이용해서는 안됨. 공공 공원이나 해변에서 집회 또는 사교적인 이유로 모임을 가지면 괌 법에 따라 처벌과 함께 공공장소 및/또는 범죄침해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됨.

g. 집행

본 행정지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벌금 또는 사업허가 해지를 받을 수 있음. DPHSS와 국세청(DRT)은 본 행정지시를 집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괌 경찰청과 괌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

4. 괌 입국 제한

제10조 3항 3호 3333목에 의거하여 제10조 19항 6호 19604목과 19605목에 지시된 바와 같이 괌을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격리됨. 이러한 격리는 DPHSS 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시행됨.

5. 격리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

제10조 19항 6호 19604목에 의거하여 DPHSS는 격리 장소를 수립하고 유지할 권한이 있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으며 격리, 규칙 수립, 명령을 내릴 수 있음. DPHSS는 정부 격리 시설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괌 입국 여행객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수립함. DPHSS 격리 및 규칙, 명령,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됨.

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격리장소 또는 격리 시설의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됨.

그 어떤 사람도 DPHSS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격리장소 또는 격리 시설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됨.

DPHSS는 이 항목과 관련된 추가 지침을 발행 할 수 있으며 괌 경찰의 지원과 함께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임.

6. 분리 가능성

만약 이 행정 지시 조항 또는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간주된다면, 무효는 유효하지 않은 조항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본 행정 지시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따라서 본 지시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음.

7. 이전의 행정지시는 모두 유효함

본 행정지시와 상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이전 행정지시들은 전면적으로 효력을 발휘함.

2020년 8월 27일 괌 하갓냐에서 공표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



ISLAND OF GUAM
OFFICE OF THE GOVERNOR
HAGĀTÑA, GUAM 96932
U.S.A.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 지시

1. 괌 지방법에 따라, 코로나 19의 전파를 예방하고, 모든 코로나 19 사례가 통제되고 치료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 (이하 "DPHSS") 국장은 다음과 같이 지침을 내림:
 - a. 괌의 모든 개인은 DPHSS 지침 2020-36에 명시된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집이나 거주지에서 계속 머물도록 지시됨. 호텔, 콘도미니엄, 타운홈, 아파트 또는 기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거주지"는 개인의 개별 호텔 객실 또는 단위를 의미함.
 - b. 개인은 DPHSS 지침 2020-36에 명시된 승인받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거주지를 떠날 수 있음. 이는 본 지침의 유효기간 동안 모든 괌 거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려는 목적, 그리고 괌 거주자가 음식, 처방전, 건강관리와 같은 필수품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요한 의료, 정부 기능, 공공안전 및 공급망의 운영을 의미함.
 - c. 개인이 집이나 거주지를 떠날 필요가 있는 경우, DPHSS 지침 2020-36에 명시된 완화 조치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함.
 - d. DPHSS는 이 지침이 코로나 19가 감염된 개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비 감염 개인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임을 발견함.
 - e. 또한 이 지침을 위반한 개인이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타인을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2. 이 지침은 2020년 8월 28일 오후 12시에 발효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2020년 9월 4일 오후 12시까지 유효함.

2020년 8월 27일 공표

ARTHUR U. SAN AGUSTIN, MHR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 국장